## 아름다운 생복한 사 입

제2021-107호 2021년 6월 4일(금)





보

## 시 정 지 표

시민공감 감동시정 균형있는 상생경제 사람중심 나눔복지 품격있는 문화관광 살기좋은 정주환경

■ 발행인: 여수시장 ■ 발행소: 공보담당관실 / 여수시 시청로 1(학동) ☎ 659-3028 FAX) 659-5803

## 고 시

○ 여수시 고시 제2021-245호

제2021-245호 도로명주소 부여·폐지 고시

3

## 공 고

이 여수시	공고	제2021-1606호	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위반업소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	5
이 여수시	공고	제2021-1607호	「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확인서 발급신청 사실 및 발급취지 공고	6
이 여수시	공고	제2021-1613호	도로지정공고(소라면 복신리 848-1번지 외 3필지)	28
○ 여수시	공고	제2021-1614호	「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」 확인서 발급신청 시실 및 발급취지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	29
이 여수시	공고	제2021-1615호	여수시 리개발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	37
이 여수시	공고	제2021-1616호	여수시 주민자회 시범 실시 및 설치 ·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	45
이 여수시	공고	제2021-1617호	여기 꾸고하신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가정규칙만 입법예고	57
이 여수시	공고	제2021-1618호	도로지정 변경 공고(돌산읍 평사리 산279번지 외 1필지)	64
이 여수시	공고	제2021-1619호	여수시 청년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	65

## 기 타

회				
람				

여수시 고시 제2021 - 245호

# 도로명주소 부여 • 폐지 고시

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, 제23조, 제24조,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건물 등에 부여·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.

2021. 6. 4. 여 수 시 장

#### ○ 도로명주소(부여·폐지) 내용

업무구분	종전주소	도로명주소	도로명주소 고 시 일	도 로 명 고 시 일	도 로 명 부여사유	이동 사유	비고
	별	지		7]	재		

<sup>※</sup>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청 민원지적과(☎061-659-3355~3358)에 문의 또는 도로 명주소안내시스템(www.juso.go.kr)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
#### ○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

- 도로명주소는 고시일 이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.
- 공공기관에서 비치·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(소재지)는 해당기관에서 도로 명주소로 변경합니다.

#### ○ 도로명주소 변경 등

-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 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.

#### ○ 참고사항

-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, 동·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 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.

#### 도로명주소 부여·폐지 고시 조서

업무구분	종전주소	도로명주소	도로명주소고시일	도로명고시일	도로명부여사유	이동사유	비고
건물번호부여	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사곡리 674-2	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서부로 857-16	20210604	20091013	율촌 서부지역 도로로 예로부터 사용되던 도로명 반영		
건물번호부며	전라남도 여수시 삼산면 서도리 1036	전라남도 며수시 삼산면 장덕로 399	20210604	20091013	군도 기존노선과 도로명을 유지(덕촌 - 장촌간 도로)		
건물번호부며	전라남도 여수시 주삼동 622-3, 680-2	전라남도 여수시 좌수영로 1158-1 (주삼동)	20210604	20091013	지역 및 위치예측성 고려		
건물번호부여	전라남도 여수시 화양면 안포리 산184, 산183-1	전라남도 며수시 화양면 화양로 798-30	20210604	20091013	도로가 지나는 지역 화양면을 반영		
건물번호부여	전라남도 여수시 율촌면 취적리 220	전라남도 여수시 율촌면 여순로 581	20210604	20091013	며수에서 순천을 연결하는 도로로 양시의 행정명칭 <b>조합</b>		
건물번호부여	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 1111-3	전라남도 며수시 돌산읍 강남10길 22	20210604	20091013	지역 및 위치예측성 고려		
건물번호부여	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 1015-7, 1015-8	전라남도 며수시 돌산읍 강남4길 29-27	20210604	20091013	지역 및 위치예측성 고려		
건물번호부며	전라남도 여수시 화양면 나진리 616-11	전라남도 여수시 화양면 나진길 56-4	20210604	20091013	지역 및 위치예측성 고려		
건물번호폐지	전라남도 여수시 율촌면 내리길 60-8		20210604	20091013	지역 및 위치예측성 고려	건물 칠거	
건물번호부며	전라남도 여수시 윮촌면 반월리 626	전라남도 여수시 율촌면 내리길 60-8	20210604	20091013	지역 및 위치예측성 고려		
건물번호폐지	전라남도 여수시 둔덕2길 6-3(미평동)		20210604	20091013	지역 및 위치예측성 고려	건물 칠거	
건물번호부여	전라남도 여수시 미평동 569-10	전라남도 여수시 둔덕2길 6~1 (미평동)	20210604	20091013	지역 및 위치예측성 고려		
건물번호부여	전라남도 여수시 미평동 569-5, 569-4	전라남도 여수시 둔덕2길 6-3 (미평동)	20210604	20091013	지역 및 위치예측성 고려		
건물번호폐지	전라남도 며수시 무선4길 31-8(선원동)		20210604	20091013	지역 및 위치예측성 고려	건물 힘거	
건물번호부며	전라남도 며수시 선원동 1229-11	전라남도 며수시 무선4길 31-8(선원동)	20210604	20091013	지역 및 위치예측성 고려		
건물번호폐지	전라남도 며수시 문수북6길 33-2(문수동)		20210604	20091013	지역 및 위치예측성 고려	건물 철거	
건물번호폐지	전라남도 며수시 문수북6길 35(문수동)		20210604	20091013	지역 및 위치예측성 고려	건물 칠거	
건물번호폐지	전라남도 여수시 문수북6길 35-1 (문수동)		20210604	20091013	지역 및 위치예측성 고려	건물 철거	
건물번호부며	전라남도 여수시 문수동 58-10, 58-11, 58-12	전라남도 여수시 문수북6길 35-1 (문수동)	20210604	20091013	지역 및 위치예측성 고려		
건물번호폐지	전라남도 며수시 선원5길 16-1 (선원동)		20210604	20091013	지역 및 위치예측성 고려	건물 현거	
건물번호부며	전라남도 며수시 선원동 1219-7	전라남도 며수시 선원5길 16-1 (선원동)	20210604	20091013	지역 및 위치예측성 고려		
건물번호폐지	전라남도 여수시 율촌면 송정길 53		20210604	20091013	지역 및 위치예측성 고려	건물 철거	
건물번호부여	전라남도 여수시 율촌면 가장리 428	전라남도 며수시 율촌면 송정길 53	20210604	20091013	지역 및 위치예측성 고려		
건물번호폐지	전라남도 여수시 시청동3길 31 (학동)		20210604	20091013	지역및위치예측성 고려	건물 칠거	
건물번호부여	전라남도 여수시 학동 96-4	전라남도 며수시 시청동3길 8(학동)	20210604	20091013	지역및위치예측성 고려		
건물번호부며	전라남도 여수시 학동 180	전라남도 며수시 시청동3길 31 (학동)	20210604	20091013	지역및위치예측성 고려		
건물번호폐지	전라남도 며수시 모천2길 33-7(모천동)		20210604	20091013	지역 및 위치예측성 고려	건물 철거	
건물번호부여	전라남도 며수시 모천동 380-1	전라남도 며수시 오천2길 33-7(오천동)	20210604	20091013	지역 및 위치예측성 고려		
건물번호부여	전라남도 여수시 화정면 개도리 158-8	전라남도 며수시 화정면 개도중앙2로 152	20210604	20091013	기존 군도노선유지(화산-혈항간 도로)		
건물번호부여	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죽림리 1196-2	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죽림3길 21-13	20210604	20111114	지역 및 위치예측성 고려		
건물번호부여	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죽림리 1196-10	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죽림3길 21-9	20210604	20111114	지역 및 위치예측성 고려		
건물번호폐지	전라남도 며수시 오렴1길 9(오림동)		20210604	20091013	지역 및 위치예측성 고려	2021년 일제조사에 의한 건물번호 폐지(건물 칠거)	
건물번호폐지	전라남도 며수시 오림1길 9-4(오림동)		20210604	20091013	지역 및 위치예측성 고려	2021년 일제조사에 의한 건물번호 폐지(건물 칠거)	
건물번호폐지	전라남도 여수시 여문문화길 9(여서동)		20210604	20091013	지역 및 위치예측성 고려	2021년 일제조사에 의한 건물번호 폐지(건물 칠거)	
건물번호폐지	전라남도 여수시 연등1길 42-3(연등동)		20210604	20091013	지역 및 위치예측성 고려	2021년 일제조사에 의한 건물번호 폐지(건물 철거)	
건물번호폐지	전라남도 여수시 연등4길 6~10 (연등동)		20210604	20091013	지역 및 위치예측성 고려	2021년 일제조사에 의한 건물번호 폐지(건물 칠거)	
건물번호폐지	전라남도 여수시 연등4길 13-14 (연등동)		20210604	20091013	지역 및 위치예측성 고려	2021년 일제조사에 의한 건물번호 폐지(건물 칠거)	
건물번호폐지	전라남도 며수시 국동남6길 9(국동)		20210604	20091013	지역 및 위치예측성 고려	2021년 일제조사에 의한 건물번호 폐지(건물 칠거)	
건물번호폐지	전라남도 며수시 봉산새철4길 22-3(봉산동)		20210604	20091013	지역 및 위치예측성 고려	2021년 일제조사에 의한 건물번호 폐지(건물 철거)	
건물번호폐지	전라남도 며수시 봉산1로 13(봉산동)		20210604	20091013	지역 및 위치예측성 고려	2021년 일제조사에 의한 건물번호 폐지(건물 철거)	
건물번호폐지	전라남도 며수시 봉산남5길 15(봉산동)		20210604	20091013	지역 및 위치예측성 고려	2021년 일제조사에 의한 건물번호 폐지(건물 칠거)	
건물번호폐지	전라남도 며수시 신월로 743 (봉산동)		20210604	20091013	도로가 지나는 지역명 반영	2021년 일제조사에 의한 건물번호 폐지(건물 칠거)	

##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위반업소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

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32조제1항(영업허가취소 등)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(영업소폐쇄)) 대상업소에 대하여 수취인 부재 등으로 인하여 등기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청문사항을 공시송달 한 결과 기간 내 의견 제출이 없고 청문에 불참하였기에,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에 따라 행정처분(영업소폐쇄)하고 처분사항을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2021년 6월 4일

## 여 수 시 장

1. 제 목 :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(영업소페쇄)

2. 관련근거 :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3호, 제6조제3항, 제32조제1항제1호.

3. 행정처분 내용

업 종	업 소 명	대표자	업소 소재지	처분의 원인	처분결과
건강기능식품	시크릿다이어	안*희	전남 여수시 신월로	영업장 시설물	영업소폐쇄
일반판매업	트 코리아		765(봉산동)	전부철거	(2021. 6. 3.)

4. 공고기간 : 2021. 6. 4. ~ 2021. 6. 21.(18일간)

- 5. 고지사항: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서면 또는 온라인(http://www.simpan.go.kr)으로 여수시장 또는 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 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.
- 6. 문 의 처 : 여수시청 식품위생과 김승호 (☎ 061- 659- 4231) 끝.

## 공 고 문

#### 여수시 공고 제2021- 1607호

	성명(법인명)					생년월일(등록번호)
	(집한정)					
		별	첨			별 첨
	부동산의 표시					
-1-1-1				별	첨	
확인서				_		
발급	취득사유					
신청인				별	첨	
LOL				_		
	공고기간					
				별	첨	
				_		
	11 m (N1 01 m 1)					### 0101/E = ## = \
	성명(법인명)					생년월일(등록번호)
대장상						
소유자		별	첨			별 첨
エボベ						
	1111/110111					##4 01 01 / E = ##4 /
	성명(법인명)					생년월일(등록번호)
등기						
명의인		별	첨			별 첨
3-1 L						

위 부동산에 대하여「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11조제1항에 따른 확인서 발급신청이 있어 같은 법 제11조제6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은 사항을 공고하니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.

2021년 6월 4일

## 여 수 시 장

#### 유 의 사 항

- 1.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신청인의 신청내용에 따라 확인서를 발급하게 됩니다.
- 2. 이의신청은 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.

210mm×297mm[백상지 80g/m²]

접수	접수 일자	신	청 인		부동산	표시		취득 사유	공고 기간	대장상	소유자	등기	소유자
번호	일자	성명	생년월일	소재지	지번	지목	면적 (m²)	사유	기간	성 명	생년월일	성 명	생년월일
		96건			123필지								
				만흥동	322-3	전	415	상속	2021. 6. 4. ~ 2021. 8. 4.	경본기주	-	윤정희	-
1	2021- 02-04	윤병두	1958.1.1.	만흥동	477	답	122	상속	2021. 6. 4. ~ 2021. 8. 4.	윤정희	-	윤정희	-
				만흥동	821-1	전	853	상속	2021. 6. 4. 2021. 8. 4.	윤정희	-	윤정희	-
2	2021- 02-15	장흥순	1962.10.15.	만흥동	산170	임야	20,331 (540 /6150)	증여	2021. 6. 4. ~ 2021. 8. 4.	장숙현	1906.12.8.	장숙현	-
3	2021- 02-17	정동석	1954.6.9.	웅천동	1577-1	전	476	상속	2021. 6. 4. 2021. 8. 4.	정창범	-	-	-
4	2021- 02-04	이봉녕	1946.3.15.	해산동	623-11	답	750	메메	2021. 6. 4. 2021. 8. 4.	이봉영	-	이봉영	-

접수 접수 번호 일자	신	청 인		부동산	표시		취득	공고 기간	대장상	소유자	등기 :	소유자	
번호	일자 [	성명	생년월일	소재지	지번	지목	면적 (㎡)	사유	기간	성 명	생년월일	성 명	생년월일
5	2021- 02-09	신두식	1973.9.24.	해산동	437	전	945	상속	2021. 6. 4. ~ 2021. 8. 4.	신봉우	1940.11.23.	신봉우	-
6	2021- 02-17	서윤진	1956.11.20.	상암동	2134	전	179	상속	2021. 6. 4. 2021. 8. 4.	서병환	-	-	-
7	2021- 02-25	김훈	1972.10.26.	돌산읍 신복리	산226	임야	12,298 (각1/2)	증여	2021. 6.	김성률	1884.10.10.	김성률	-
	02 20	김숙경	1968.7.4.	C 11-1			(   1/2)		2021. 8. 4.				
8	2021- 02-04	정재옥	1949.10.15.	돌산읍 율림리	86	전	926	증여	2021. 6. 4. 2021. 8. 4.	궁본태문	-	궁본태문	-
9	2021- 02-04	정재옥	1949.10.15.	돌산읍 율림리	87	전	1,167	증여	2021. 6. 4. 2021. 8. 4.	목본장하	-	목본장하	-

접수	접수 일자	신	청 인		부동산	표시		취득	공고 기간	대장상	소유자	등기 소유자	
번호	일자	성명	생년월일	소재지	지번	지목	면적 (m²)	사유	기간	성 명	생년월일	성 명	생년월일
10	2021-	제미엽	1965.8.22.	돌산읍 율림리	496	전	80	상속	2021. 6. 4. 2021. 8. 4.	제양순	-	제양순	-
10	02-10	<b>州日</b> 日	1900.0.22.	돌산읍 율림리	496-1	도로	148	상속	2021. 6. 4. 2021. 8. 4.	제양순	-	제양순	-
11	2021- 02-09	박해준	1966.5.12.	돌산읍 죽포리	산118-3	임야	298	매매	2021. 6. 4. 2021. 8. 4.	조순심	-	-	-
12	2021- 02-25	전준배	1969.12.17.	돌산읍 죽포리	727	전	142	메메	2021. 6. 4. 2021. 8. 4.	윤치덕	-	윤치덕	-
13	2021-	김훈	1972.10.26.	돌산읍 서덕리	산36	임야	1,785 (각1/2)	증여	2021. 6. 4.	김성률	1884.10.10.	기 서 ㄹ	_
13	02-25	김숙경	1968.7.4.	기탁다	(વંડ0	∃ੂੰ	(각1/2)	তপ	2021. 8. 4.	石の五	1004.10.10.	김성률	_
14	2021- 02-10	김태민	1948.12.14.	돌산읍 금봉리	365	전	136	상속	2021. 6. 4. 2021. 8. 4.	김점두	1907.8.3.	김점두	-

접수	접수	신 청 인 접수 일자			부동산	표시		취득 사유	공고 기간	대장상	소유자	등기 소유자	
번호	일자	성명	생년월일	소재지	지번	지목	면적 (m²)	사유	기간	성 명	생년월일	성 명	생년월일
15	2021- 02-10	김태민	1948.12.14.	돌산읍 금봉리	395-4	전	1,983 (219 /819)	메메	2021. 6. 4. 2021. 8. 4.	곽용주	-	곽용주	-
16	2021- 02-17	신중갑	1946.3.19.	돌산읍 금봉리	393	답	321	증여	2021. 6. 4. 2021. 8. 4.	신정진	1898.3.3.	신정진	-

접수번호	접수 일자	신	청 인		부동산	표시		취득 사유	공고 기간	대장상	소유자	등기 :	소유자				
번호	일자	성명	생년월일	소재지	지번	지목	면적 (m²)	사유	기간	성 명	생년월일	성 명	생년월일				
				돌산읍 금봉리	567	전	122 (각1/2)	증여	2021. 6. 4. ~ 2021. 8. 4.	김성률	1884.10.10.	김성률	-				
		7] <del>ਨ</del>	1079 10 96	돌산읍 금봉리	568	대	542 (각1/2)	증여	2021. 6. 4. 2021. 8. 4.	김성률	1884.10.10.	김성률	-				
		김훈	1972.10.26.	돌산읍 금봉리	572	전	238 (각1/2)	증여	2021. 6. 4. ~ 2021. 8. 4.	김성률	1884.10.10.	김성률	-				
17	2021-			돌산읍 금봉리	597	답	397 (각1/2)	증여	2021. 6. 4. ~ 2021. 8. 4.	김성률	1884.10.10.	김성률	-				
17	02-25			돌산읍 금봉리	597-1	답	1,074 (각1/2)	증여	2021. 6. 4. ~ 2021. 8. 4.	김성률	1884.10.10.	김성률	-				
		기소리		1000 7.4	1000.7.4	1000 7.4	스권 1060 7 /	돌산읍 금봉리	597-2	전	6,397 (각1/2)	증여	2021. 6. 4. ~ 2021. 8. 4.	김성률	1884.10.10.	김성률	-
	김숙경	<b>台</b> 野경	1968.7.4.	돌산읍 금봉리	597-3	답	3,134 (각1/2)	증여	2021. 6. 4. 2021. 8. 4.	김성률	1884.10.10.	김성률	-				
					돌산읍	x1 401	- 01 61-	11 - 20,430	スペ	2021. 6. 4.	키셔르	1004 10 10	기시근				

접수	접수 일자	신	청 인		부동산	표시		취득	공고 기간	대장상	소유자	등기 :	소유자
번호	일자	성명	생년월일	소재지	지번	지목	면적 (m²)	사유	기간	성 명	생년월일	성 명	생년월일
18	2021- 02-04	조기재	1952.9.24.	돌산읍 둔전리	107	대	575	상속	2021. 6. 4. 2021. 8. 4.	허귀덕	-	허귀덕	-
19	2021- 02-10	조비상	1942.2.25.	돌산읍 둔전리	531	대	509	증여	2021. 6. 4. 2021. 8. 4.	조운협	-	-	-
20	2021- 02-09	김도근	1953.6.4.	돌산읍 우두리	161	대	225	상속	2021. 6. 4. 2021. 8. 4.	김동고이	-	김동고이	-
21	2021- 02-15	김양순	1953.8.29.	돌산읍 우두리	17	전	942	상속	2021. 6. 4. 2021. 8. 4.	김재완	1918.1.20.	김재완	-
22	2021- 02-17	이장태랑	1940.8.30	돌산읍 우두리	산113	임야	595	메메	2021. 6. 4. 2021. 8. 4.	김동주	-	-	-
23	2021- 05-12	김재순	1941.10.7.	돌산읍 우두리	산309-84	임야	1,025 (68 /1025)	메메	2021. 6. 4. 2021. 8. 4.	김가오	-	김가오	-

접수	접수 일자	신	청 인		부동산	표시		취득 사유	공고 기간	대장상	소유자	등기 :	소유자
번호	일자	성명	생년월일	소재지	지번	지목	면적 (m²)	사유	기간	성 명	생년월일	성 명	생년월일
24	2021-	김숙자	1944.3.17.	소라면 관기리	222	도로	43	상속	2021. 6. 4. ~ 2021. 8. 4.	김상진	-	김상진	-
24	02-23	심녹사	1944.3.17.	소라면 관기리	267-2	도로	357	상속	2021. 6. 4. 2021. 8. 4.	김상진	-	김상진	-
25	2021-	이동재	1955.3.15.	소라면 복산리	816	전	109	상속	2021. 6. 4. 2021. 8. 4.	이용찬	-	이용찬	-
23	02-23	이중세	1933.3.13.	소라면 복산리	산128	임야	496	상속	2021. 6. 4. ~ 2021. 8. 4.	이용찬	-	-	-
26	2021-	~ ㅈ긺	1057.0.22	율촌면 조화리	79-2	도로	89	상속	2021. 6. 4. ~ 2021. 8. 4.	조의환	1903.11.27.	조의환	-
20	02-10	조주현	1957.9.23.	율촌면 조화리	191-2	도로	93	상속	2021. 6. 4. 2021. 8. 4.	조의환	1903.11.27.	조의환	-
27	2021- 02-17	위종량	1948.1.27.	율촌면 산수리	1573-10	답	995 (600 /1503)	상속	2021. 6. 4. 2021. 8. 4.	위선권	-	위선권	-

접수 번호	접수 일자	신	청 인		부동산	표시		취득	공고 기간	대장상	소유자	등기	소유자
번호	일자	성명	생년월일	소재지	지번	지목	면적 (m²)	· 사유	기간	성 명	생년월일	성 명	생년월일
28	2021- 04-06	위회환	1961.8.10.	율촌면 산수리	1219-6	도로	89	매매	2021. 6. 4. 2021. 8. 4.	위찬민	1898.2.17.	위찬민	-
29	2021- 02-10	이승용	1976.6.16.	율촌면 가장리	1972-2	답	893	증여	2021. 6. 4. 2021. 8. 4.	이영록	-	이영록	-
30	2021- 02-15	강재원	1949.6.26.	율촌면 가장리	산166	임야	4,463	상속	2021. 6. 4. 2021. 8. 4.	강영무	1901.1.11.	-	-
31	2021- 02-15	양회림	1966.8.1.	율촌면 가장리	976-3	전	416	상속	2021. 6. 4. ~ 2021. 8. 4.	양원묵	-	양원묵	-
32	2021- 02-15	강재원	1949.6.26.	율촌면 봉전리	430-1	임야	2,060	상속	2021. 6. 4. ~ 2021. 8. 4.	강영무	1901.1.11.	-	-
33	2021- 02-15	양회림	1966.8.1.	율촌면 봉전리	892	대	393	상속	2021. 6. 4. ~ 2021. 8. 4.	양원묵	-	양원묵	-
34	2021- 02-17	최천수	1947.1.25	율촌면 봉전리	830	전	595	매매	2021. 6. 4. 2021. 8. 4.	조점권	-	-	-

접수	접수 일자	신	청 인		부동산	표시		취득 사유	공고 기간	대장상	소유자	등기 :	소유자
번호	일자	성명	생년월일	소재지	지번	지목	면적 (m²)	사유	기간	성 명	생년월일	성 명	생년월일
35	2021- 02-17	조애자	1958.1.6.	율촌면 봉전리	638	대	254	메메	2021. 6. 4. 2021. 8. 4.	옥천형래	-	옥천형래	-
36	2021- 02-04	박상호	1961.2.4.	율촌면 반월리	396	전	238	상속	2021. 6. 4. 2021. 8. 4.	박병숙	-	-	-
37	2021- 02-15	조선석	1949.1.3.	율촌면 취적리	565-16	전	774	상속	2021. 6. 4. 2021. 8. 4.	조봉안	1893.9.20.	조봉안	-
38	2021- 02-15	강재원	1949.6.26.	율촌면 상봉리	330	전	774	상속	2021. 6. 4. ~ 2021. 8. 4.	강인수	1912.8.5.	강인수	-
39	2021- 02-15	강재원	1949.6.26.	율촌면 상봉리	산12	임야	10,810	상속	2021. 6. 4. ~ 2021. 8. 4.	강영무	1901.1.11.	-	-
40	2021- 02-08	권수철	1947.12.13.	화양면 나진리	626-8	임야	132.5	상속	2021. 6. 4. 2021. 8. 4.	권채홍	-	권채홍	-
41	2021- 04-05	박태성	1967.8.15.	화양면 나진리	산374	임야	1,587	상속	2021. 6. 4. ~ 2021. 8. 4.	박평래	-	-	-

접수	접수 일자	신	청 인		부동산	표시		취득 사유	공고 기간	대장상	소유자	등기 :	소유자
번호	일자	성명	생년월일	소재지	지번	지목	면적 (m²)	사유		성 명	생년월일	성 명	생년월일
42	2021- 04-06	배복래	1939.1.25.	화양면 나진리	산364	임야	4,264	상속	2021. 6. 4. ~ 2021. 8. 4.	배영기	-	-	-
43	2021- 02-25	최상진	1957.7.10.	화양면 창무리	산93	임야	992	매매	2021. 6. 4. ~ 2021. 8. 4.	김화성	-	-	-
44	2021- 02-04	문청명	1963.3.11.	화양면 이천리	산87-2	임야	2,479 (630/7 50)	증여	2021. 6. 4. ~ 2021. 8. 4.	문의연	-	문의련	-
45	2021- 02-04	진판식	1952.3.15.	화양면 이천리	산168-1	임야	694	상속	2021. 6. 4. 2021. 8. 4.	대원복실	-	대원복실	-
46	2021-	이영호	1961.1.1.	화양면 이천리	산50	임야	2,876	상속	2021. 6. 4. 2021. 8. 4.	이선우	-	-	-
40	02-04	이 옆 죠	1901.1.1.	화양면 이천리	산61-2	임야	1,190	상속	2021. 6. 4. 2021. 8. 4.	이선우	-	이선우	-
47	2021- 02-04	여운오	1964.2.10.	화양면 이천리	617-1	전	1,438 (1/4)	상속	2021. 6. 4. 2021. 8. 4.	여정삼	-	여정삼	-

접수	접수 일자	신	청 인		부동산	표시		취득 사유	공고 기간	대장상	소유자	등기 :	소유자
번호	일자	성명	생년월일	소재지	지번	지목	면적 (m²)	사유	기간	성 명	생년월일	성 명	생년월일
48	2021- 02-04	이영학	1959.5.25.	화양면 이천리	산127	임야	10,343	상속	2021. 6. 4. 2021. 8. 4.	이동의	-	-	-
49	2021-	정상택	1979.11.13.	화양면 이천리	87-2	전	3,774 (1/3)	상속	2021. 6. 4. 2021. 8. 4.	정성원	-	정성원	-
43	02-17	78.0 4	1919.11.13.	화양면 이천리	산69	임야	2,293 (1/3)	상속	2021. 6. 4. 2021. 8. 4.	정성원	-	정성원	-
50	2021- 02-09	여운오	1964.2.10.	화양면 옥적리	632	답	65	상속	2021. 6. 4. ~ 2021. 8. 4.	여정삼	-	여정삼	-
51	2021- 02-17	장용수	1961.2.7.	화양면 옥적리	1273	전	327	매매	2021. 6. 4. 2021. 8. 4.	김부안	-	김부안	-
52	2021- 02-10	박정익	1983.2.16.	화양면 화동리	1256-2	전	856	매매	2021. 6. 4. 2021. 8. 4.	박상옥	-	박상옥	-
53	2021- 02-10	박정익	1983.2.16.	화양면 화동리	1260	답	407	매매	2021. 6. 4. 2021. 8. 4.	박태용	1947.2.25.	박태용	-

접수	접수 일자	신	청 인		부동산	표시		취득 사유	공고 기간	대장상	소유자	등기	소유자
번호	일자	성명	생년월일	소재지	지번	지목	면적 (m²)	사유	기간	성 명	생년월일	성 명	생년월일
54	2021- 02-17	정옥자	1962.3.22.	화양면 화동리	884	대	208	메메	2021. 6. 4. 2021. 8. 4.	김성곤	1910.5.13.	김성곤	-
55	2021- 02-17	이영일	1944.8.19.	화양면 화동리	산308	임야	2,678	상속	2021. 6. 4. 2021. 8. 4.	이태용	1990.4.20.	이태용	-
56	2021- 02-08	홍영학	1952.1.11.	화양면 안포리	산629-1	임야	429	상속	2021. 6. 4. 2021. 8. 4.	홍용기	-	홍용기	-
57	2021- 02-25	고영복	1956.10.2.	화정면 백야리	산112	임야	793	상속	2021. 6. 4. 2021. 8. 4.	고흥모	_	-	-
58	2021- 02-10	박정순	1947.11.4.	화정면 월호리	119-2	전	988	증여	2021. 6. 4. 2021. 8. 4.	박현순	-	박현순	-
59	2021- 02-08	임창서	1958.8.22.	화정면 개도리	794-3	전	1,220	매매	2021. 6. 4. 2021. 8. 4.	정사홍	-	-	-
60	2021- 02-15	임정민	1949.7.21.	화정면 개도리	산284	임야	1,983	증여	2021. 6. 4. 2021. 8. 4.	임정길	-	임정길	-

접수	접수일자	신	청 인		부동산	표시		취득 사유	공고 기간	대장상	소유자	등기 :	소유자
번호	일자	성명	생년월일	소재지	지번	지목	면적 (m²)	사유		성 명	생년월일	성 명	생년월일
61	2021- 02-17	강복남	1953.6.12.	화정면 개도리	산656	임야	2,777	상속	2021. 6. 4. ~ 2021. 8. 4.	강내협	-	-	-
62	2021- 02-23	정곽현	1983.12.3.	화정면 개도리	1594-2	전	220.3	증여	2021. 6. 4. 2021. 8. 4.	정쌍돌	-	정쌍돌	-
63	2021- 02-24	유동원	1965.3.4.	화정면 개도리	220-3	전	210.6	매 매	2021. 6. 4. 2021. 8. 4.	유동원	-	-	-
				화정면 개도리	1594-5	전	147.7	증여	2021. 6. 4. 2021. 8. 4.	정쌍돌	-	정쌍돌	-
64	2021- 02-24	정인평	1959.6.23.	화정면 개도리	1594-6	전	187.3	증여	2021. 6. 4. 2021. 8. 4.	정쌍돌	-	정쌍돌	-
				화정면 개도리	1594-7	전	116.7	증여	2021. 6. 4. 2021. 8. 4.	정쌍돌	-	정쌍돌	-

접수	접수 일자	신	청 인		부동산	표시		취득	공고 기간	대장상	소유자	등기 :	소유자
번호	일자	성명	생년월일	소재지	지번	지목	면적 (㎡)	사유	기간	성 명	생년월일	성 명	생년월일
65	2021-	ol ラi 스	1075 10 22	화정면 개도리	300-1	답	678 (307 /512)	메메	2021. 6. 4. 2021. 8. 4.	이재조	-	이재조	-
05	02-24	임찬수	1975.10.22.	화정면 개도리	300-1	답	678 (205 /512)	매매	2021. 6. 4. 2021. 8. 4.	이복남	-	이복남	-
66	2021- 02-04	배철우	1965.4.7.	화정면 제도리	28-1	전	549	메 메	2021. 6. 4. 2021. 8. 4.	임한석	-	-	-
67	2021- 02-04	배철우	1965.4.7.	화정면 제도리	298-4	대	327	메메	2021. 6. 4. 2021. 8. 4.	배정태	-	배정태	-
68	2021- 02-08	배현철	1974.10.30.	화정면 제도리	304-2	전	1,746	매매	2021. 6. 4. 2021. 8. 4.	배윤조	-	-	-

접수	접수 일자	신	청 인		부동산	표시		취득 사유	공고 기간	대장상	소유자	등기	소유자
번호	일자	성명	생년월일	소재지	지번	지목	면적 (m²)	사유	기간	성 명	생년월일	성 명	생년월일
				화정면 제도리	173-1	답	142	증여	2021. 6. 4. 2021. 8. 4.	임치화	-	-	-
69	2021- 02-08	임규나	1989.1.13.	화정면 제도리	173-2	답	367	증여	2021. 6. 4. 2021. 8. 4.	임치화	-	-	-
				화정면 제도리	173-3	답	215	증여	2021. 6. 4. 2021. 8. 4.	임치화	-	-	-
70	2021- 02-08	임재화	1965.7.25.	화정면 제도리	150-1	전	2,693	매매	2021. 6. 4. ~ 2021. 8. 4.	임흥섭	-	임흥섭	-
71	2021- 02-08	임재화	1965.7.25.	화정면 제도리	171	답	489	메메	2021. 6. 4. ~ 2021. 8. 4.	임용섭 외 2	-	임용섭 외2	-
72	2021- 02-08	임재화	1965.7.25.	화정면 제도리	208	전	288	메메	2021. 6. 4. ~ 2021. 8. 4.	임귀일 외 2	-	임귀일 외 2	-
73	2021- 02-08	임재화	1965.7.25.	화정면 제도리	238-5	전	1,326	메메	2021. 6. 4. 2021. 8. 4.	임채일	-	임채일	-

접수 번호	접수 일자	신	청 인		부동산	표시		취득	공고 기간	대장상	소유자	등기	소유자
번호	일자	성명	생년월일	소재지	지번	지목	면적 (m²)	사유	기간	성 명	생년월일	성 명	생년월일
74	2021-	임재화	1965.7.25.	화정면 제도리	298-3	전	628	매매	2021. 6. 4. ~ 2021. 8. 4.	배정근 외 1	-	배정근 외 1	-
74	02-08	급개와	1905.7.25.	화정면 제도리	298-14	대	73	매매	2021. 6. 4. 2021. 8. 4.	배정근 외 1	-	배정근 외 1	-
75	2021- 02-08	임석현	1954.10.5.	화정면 제도리	39	전	476	상속	2021. 6. 4. 2021. 8. 4.	임여환	-	-	-
76	2021-	임석현	1954.10.5.	화정면 제도리	산60-2	임야	15,953	상속	2021. 6. 4. ~ 2021. 8. 4.	임행권	-	임행권	-
70	02-08	참석선	1934.10.3.	화정면 제도리	산60-4	임야	609	상속	2021. 6. 4. ~ 2021. 8. 4.	임행권	-	임행권	-
77	2021- 02-09	임재화	1965.7.25.	화정면 제도리	230-4	대	102	메메	2021. 6. 4. ~ 2021. 8. 4.	임원직	-	임원직	-
78	2021- 02-09	한양수	1973.9.3.	화정면 제도리	230-1	대	1,365 (215 /1365)	매매	2021. 6. 4. 2021. 8. 4.	임원직	-	임원직	-

접수	접수 일자	신	청 인		부동산	표시		취득 사유	공고 기간	대장상	소유자	등기	소유자
번호	일자	성명	생년월일	소재지	지번	지목	면적 (m²)	사유	기간	성 명	생년월일	성 명	생년월일
79	2021- 02-09	임규나	1989.1.13.	화정면 제도리	산12	임야	4,364	증여	2021. 6. 4. 2021. 8. 4.	임흥준	-	-	-
80	2021- 02-25	배동권	1941.9.5.	화정면 제도리	108-1	임야	674	메메	2021. 6. 4. 2021. 8. 4.	배원일	-	-	-
81	2021-	임성주	1967.7.6.	화정면 제도리	44	전	486	증여	2021. 6. 4. 2021. 8. 4.	임태실	-	임태실	-
01	02-25	급성구	1907.7.0.	화정면 제도리	산68	임야	2,579	증여	2021. 6. 4. ~ 2021. 8. 4.	임태실	-	-	-
82	2021- 02-25	임성주	1967.7.6.	화정면 제도리	산27	임야	992	증여	2021. 6. 4. ~ 2021. 8. 4.	임사수	-	-	-
83	2021- 02-04	임경찬	1964.10.13.	화정면 하화리	308	전	1,702	매매	2021. 6. 4. 2021. 8. 4.	임송택	-	임송택	-
84	2021- 02-04	임증택	1955.3.4.	화정면 하화리	36	전	301	매매	2021. 6. 4. 2021. 8. 4.	임송택	-	임송택	-

접수	접수 일자	신	청 인		부동산	표시		취득 사유	공고 기간	대장상	소유자	등기 소유자	
번호	일자	성명	생년월일	소재지	지번	지목	면적 (m²)	사유	기간	성 명	생년월일	성 명	생년월일
				화정면 하화리	17	전	1,068	상속	2021. 6. 4. 2021. 8. 4.	임기모	-	임기모	-
85	2021- 02-04	임증택	1955.3.4.	화정면 하화리	34	전	327	상속	2021. 6. 4. 2021. 8. 4.	임기모	-	임기모	-
				화정면 하화리	35	전	208	상속	2021. 6. 4. 2021. 8. 4.	임기모	-	임기모	-
86	2021- 02-04	강나윤	1959.1.15.	화정면 낭도리	1180	전	55	메메	2021. 6. 4. ~ 2021. 8. 4.	김수돌	-	-	-
87	2021- 02-08	장영재	1957.8.24.	화정면 낭도리	1244	전	377	메메	2021. 6. 4. ~ 2021. 8. 4.	황모돌	-	-	-
88	2021- 02-08	김양신	1974.4.5.	화정면 낭도리	1128	전	284	메메	2021. 6. 4. ~ 2021. 8. 4.	이경순	-	-	-
89	2021- 02-04	이정민	1977.1.12.	화정면 낭도리	808	전	152	증여	2021. 6. 4. 2021. 8. 4.	이진봉	-	이진봉	-

접수	접수 일자	신	청 인		부동산	표시		취득 사유	공고 기간	대장상	소유자	등기 소유자	
번호	일자	성명	생년월일	소재지	지번	지목	면적 (㎡)	] 사유 	기간	성 명	생년월일	성 명	생년월일
90	2021-	이정민	1977.1.12.	화정면 낭도리	1322-1	임야	369	메메	2021. 6. 4. 2021. 8. 4.	조양준	-	-	-
90	02-04	의 정 단	1977.1.12.	화정면 낭도리	1322-2	전	161	메메	2021. 6. 4. 2021. 8. 4.	조양준	-	-	-
91	2021- 02-25	강채구	1935.1.20.	화정면 낭도리	산295-1	임야	20,430 (1/4)	상속	2021. 6. 4. 2021. 8. 4.	강순익	-	강순익	-
92	2021- 02-25	강채구	1935.1.20.	화정면 낭도리	산60-7	임야	595	상속	2021. 6. 4. 2021. 8. 4.	강문현	1912.4.11.	강문현	-
93	2021- 02-10	이송희	1963.3.2.	화정면 조발리	192	전	53	메메	2021. 6. 4. 2021. 8. 4.	김치석	-	-	-
94	2021-	신충우	1951.2.24.	화정면 적금리	872	전	1,276	매매	2021. 6. 4. ~	신삼천	_	신삼천	_
34	94   2021- 02-08	21- -08 신일우 1958.3.4.		'ㅋㅁ니	012	· 他	1,270	<b>-</b> 11 -11	2021. 8. 4.	선급선	_	선급선	_

접수	접수 일자	신	청 인		부동산	표시		취득 사유	공고 기간	대장상	소유자	등기 소유자							
번호	일자	성명	생년월일	소재지	지번	지목	면적 (m²)	사유	기간	성 명	생년월일	성 명	생년월일						
95	2021- 02-25	강영숙	1958.7.9.	화정면 적금리	612	묘지	119	상속	2021. 6. 4. 2021. 8. 4.	강응학	-	-	-						
96	2021-	강영숙	강영숙	강영숙	강영숙	강영숙	강영숙	강영숙	1958.7.9.	화정면 적금리	573-2	임야	2,317	매매	2021. 6. 4. 2021. 8. 4.	김상구	-	-	-
90	2021- 02-25	∕থ তদ	1900.7.9.	화정면 적금리	573-3	전	1,438	메메	2021. 6. 4. 2021. 8. 4.	김상구	-	-	-						

## 이 의 신 청 서

• 색상이 어두운 난( )은 신청인이 적	작성하지 않습니다.
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

( 앞쪽)

접수번호		접수일시	발급일		처리기간	· 공고기간 만료일 부터 2개월
	성명(법인명)			(주민)등록번	호	
신청인	주소			전화번호		
부동산	소재지			지목		면적(m²)
이의신청 사 유	※이이시처	사유를 구체적으로 작성하C	d 주세O			
확인서 빌		까까글 ་ᠬᆲ ་ ་ ་ ་ ་ ་ ་ ་ ་ ་ ་ ་ ་ ་ ་ ་ ་ ་		개 허용 여투	4 : □	공개 □ 불가
했다는 공	B고가 있습니 소유권 이전등	의 소유임에도 불구하고 다. 그러나 별첨 소명서류 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	와 같이 위	부동산은 본인	<u> </u> 의 소	· ·
					년	월 일
			신청	형인		(서명 또는 인)
				여 =	수 시	장 귀하
첨부서류	이의신청인의	소유임을 소명할 수 있는 관련 소	명서류			수수료 없음

#### 개인정보의 수집・이용・제공 동의서

본인은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15조, 제17조, 제24조 및 제24조의2에 따라 「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대장소관청(해당 권한이 위임·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·위탁받은 자를 포함합니다)이 개인정보를 수집·이용·제공하는 데 동의합니다.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#### [여수시 공고 제2021-1613호]

## 도로 지정 공고

여수시 소라면 복산리 848-1번지 외 3필지 상 건축허가와 관련하여「건축법」 제2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로로 지정·공고합니다.

#### 1. 도로 지정 공고 내역

도 로	위 치	도로길이 (m)	도로너비 (m)	도로면적 (m²)	관련지번 및 이해 관계인 동의 여부	비 고
74	]			1,233	도로대장 참조 (허가민원과 비치)	
	847-8			13		
	847-7			381		
소라면 복산리	846-5	153.9	6.8	496		
	847-5			327		
	846-2			16		

2. 관련도서 : 생략(여수시청 허가민원과에 비치)

#### 3. 기타사항

도로 지정과 관련된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여수시청 허가민원과 (061-659-4103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2021. 6. 4.

여 수 시 장

# 공 시 송 달 공 고

「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제11조 제6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따라 등기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, 대장에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는 자나 그 상속인 또는 대장상 전매자나 그 상속인에게 확인서 발급신청 사실 및 발급취지의 통지를 하였으나, 폐문부재 등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「행정절차법」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2021. 6. 4.

# 여 수 시 장

- 1. 공고내용 : 확인서 발급신청 사실 및 발급취지 통지
- 2. 공고대상 : 91명 (붙임 참조)
- 3. 공고기간 : 2021. 6. 4. ~ 2021. 6. 18. (15일간)
- 4. 공고방법 : 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
- 5. 기타사항 : 기타 문의사항은 여수시청 민원지적과 부동산특별조치법T/F팀 (T.

061-659-5640~5642)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붙 임 1. 공시송달 조서 1부.
  - 2. 이의신청서 1부. 끝.

	확인서 발급신청 사실 및 발급취지 통지 공시송달 목록														
접수			동산의 3	(A)		대장상		발급 신청인	취득사유			공시송달 대상	반송사유	공고기간	비고
번호	읍-면	동리	지번	지목	면적(m²)	소유자	이름	생년월일	230.2 V250	이 름	생년월일	주소	-50 ///	8-7/5	
										신광욱	1970.*.*.	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로12길			
415	삼산	손죽	산1334	전	198	이석수	신한규	1967.**.**.	OH OH	박주덕	1944.*.**.	전라남도 여수시 관문1길	폐문부재	2021.4.28.~ 2021.6.28.	
										신순애	1956.*.**.	서울특별시 강동구 아리수로94길			
420	화정	낭도	134-1	대	139	조봉삼	김장수	1950.*.**.	OH OH	김은영	1969.*.**.	광주광역시 광산구 신장로	폐문부재		
										김차남	1968.**.**.	인천광역시 남동구 선수촌로	폐문부재		
										고도영	1985.*.**.	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야대로492번길	폐문부재		
						account a financia				장원	1992.*.**.	광주광역시 남구 효우로	폐문부재		
421	화정	낭토	192	잡종지	155	장도조 김찬선 장문옥	김장수	1950.*.**.	oli oli	김경암	1962.*.**.	서울특별시 구로구 부광로	폐문부재		
										강용구	1949.*.**.	광주광역시 남구 봉선중앙로118번길	폐문부재		
										장현영	1979.**.**.	광주광역시 남구 군분로77번길	폐문부재		
										장아영	1976.*.**.	광주광역시 남구 서동로	폐문부재		
443	화정	여자	581	전	1250	최재준	최칠평	1963.*.**.	상속	여경복	1968.*.**.	울산광역시 남구 번영로84번길	폐문부재	<u>.</u>	
449	돌산	서덕	882	대	178	이상용	이준성	1964.*.*.	상속	김옥순	1966.*.**.	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남로84번길	폐문부재		
										김연심	1978.*.**.	경기도 여주시 여흥로128번길	폐문부재		
										차현숙	1966.**.**.	전라남도 해남군 문내면 골몰길	폐문부재		
450	삼산	손죽	산423	전	604	71015	7104.4	3037444		김정진	1964.*.**.	부산광역시 영도구 청학서로	폐문부재		
430	D.C.	5.7	2423		694	김인도	김영숙	1947.*.**.	상속	곽종엽	1947.*.**.	서울특별시 구로구 개봉로17바길	폐문부재	8:	
										박추봉	1961.*.**.	부산광역시 사하구 하신번영로171번길	폐문부재		
										김태훈	1963.*.**.	서울특별시 광진구 용마산로3길	폐문부재		
453		호명	740	답	370	허동룡	허정재	1959.*.**.	교환	허석만	1971.*.**.	경기도 안성시 대덕면 신령로	폐문부재	(in	
456		오찬 오찬	339 339-1	전 전	218 50	곽명선	락종은	1944.*.*.	상속	김은수	1975.*.*.	경기도 시흥시 정왕천로375번길	폐문부재		
464	남면	우학	234-1	CH	162	공활인	김두례	1965.*.*.	OH OH	공철민	1971.*.**.	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안중로18번길	폐문부재		
_										-				1	

							100			1					
466	돌산	둔전	722-6	전	13	박준상	박희경	1939.*.*.	OH OH	박병철	1965.*.**.	경기도 파주시 경의로1004번길	폐문부재		
400	· e C ·		,,,,,,,,,,,,,,,,,,,,,,,,,,,,,,,,,,,,,,,	5.6	15	720	740	1939.	-11-11	박삼식	1954.*.*.	광주광역시 남구 수박등로48번길	폐문부재	2 2.00	
467	돌산	군내	산187	임야	586	장정윤	김수평	1946.**.**.	OH OH	김화자	1946.**.*.	광주광역시 북구 우치로347번길	·폐문부재		
460	도사	~π	1105.0	254	****	714401	717451	1020 ++ ++	на	박철웅	1984.*.**.	충청남도 서산시 지곡면 화천1로	폐문부재		
468	돌산	죽포	1195-9	전	1418	김상인	김정태	1938.**.**.	상속	김연진	1973.*.**.	경기도 의정부시 오목로35번길	폐문부재		,
471	소라	복산	산98	임야	12992	서정윤	서찬석	1950.*.**.	상속	서찬심	1952.*.**.	전라남도 무안군 무안읍 보평로	폐문부재	ж	
		80					6:			이부현	1975.*.**.	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송정1로8번길	폐문부재		
										이재기	1946.*.*.	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답십리로62길	폐문부재		
1.51			5.4539			V2.484	6000000	W67554505		황숙이	1959.**.*.	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544번길	폐문부재	) Sp	
484	소라	대포	796	임야	307	서봉춘	임병권	1962.*.*.	OH OH	이춘근	1949.*.**.	서울특별시 양전구 월정로	폐문부재		(5)
										김영수	1969.*.**.	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대포1길	수취인불명		Ę.
										이대근	1956.*.*.	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신곡로	폐문부재		
485 486 487	남면 남면 남면	안도 안도 안도	348-5 348-3 산348-2	임야 임야 임야	3434 1884 1353	김본영홍 김본영홍 김본영홍	장시덕	1934.*.**.	상속	김길남	1963.*.*.	경상복도 포항시 남구 장기면 동해안로3772번길	폐문부재	×	71
1.52	돌산	죽포	1579-3	전	569		115 23 11		1,1000000						
488	돌산	죽포	1580	전	638	김형배	박임수	1950.**.*.	OH OH	김민수	1960.*.**.	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만덕로3길	폐문부재		45
										김형진	1967.**.**.	경기도 파주시 운정2길	폐문부재		
489	돌산	죽포	산106	田利	5917	김택희호	죽포 새마을회	3636-****	증여	김형훈	1970.*.*.	경상북도 포항시 흥해읍 도음로877번길	폐문부재	38	8
										최용준	1967.*.**.	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구룡2길	폐문부재		
F										김태훈	1963.*.**.	서울특별시 광진구 용마산로3길	폐문부재		
										차현숙	1966.**.**.	전라남도 해남군 문내면 골몰길	폐문부재	:	-
491	삼산	손죽	산467	전	1587	김인도	김춘태	1940.*.**	상속	김복순	1957.*.**.	인천광역시 서구 완정로34번길	<mark>폐</mark> 문부재	2 <b>9</b> 7 a	
-										박추봉	1961.*.**.	부산광역시 사하구 하신번영로171번길	폐문부재		io i
										김정진	1964.*.**.	부산광역시 영도구 청학서로	폐문부재		
495	삼산	손죽	산465	CH	496	김동언	김춘태	1940.*.**.	OH OH	김정자	1955.*.**.	전라남도 광양시 행정1길	폐문부재	*	
-								15.		박은자	1951.*.**.	전라남도 목포시 남약1로52번길	폐문부재		14
496	3	호명	산190	임야	397	박봉기	박태랑	1943.*.**	상속	안금순	1945.*.*.	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28길	폐문부재		-
									1	박창숙	1973.*.**.	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28길	폐문부재	:	-
-	돌산	율림	산303-1	임야	18050										
2 18	돌산	율림	산347	임야	1853										
497	돌산	율림	산347-2	임야	1403	신상호	신중일	1941.**.**.	상속	한옥자	1938.*.**.	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죽포길	수취인불명		io i
. 0	돌산	율림	산347-6	임야	149										
							5			김정란	1971.*.*.	전라남도 광양시 행정1길	폐문부재		
535	화정	여자	593-7	전	169	김본석	김정록	1951.*.**.	상속	김창심	1957.**.**.	전라남도 순천시 덕암길	폐문부재		12 1
										최경수	1961.*.**.	광주광역시 서구 풍암중앙로	폐문부재	<u>.</u>	
-										김형상	1970.*.*.	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양주산성로	폐문부재		
									:	김윤철	2000.*.**.	경기도 양주시 백석을 양주산성로	폐문부재	:	-
538	삼산	손죽	산230	임야	8430 (1/2)	김지수	김이재	1942.*.*.	상속	우섬자	1940.*.**.	광주광역시 남구 효우2로	폐문부재	297.	
-										송인숙	1967.**.*.	경기도 의정부시 시민로246번길	폐문부재		is :
_							2								

										이재석	1971.*.*.	광주광역시 서구 동림2지구길	폐문부재		
										박수용	1965.**.*.	경기도 부천시 은성로76번길	폐문부재	<u> </u>	
										김동혁	1997.**.**.	전라북도 순창군 순창읍 옥천로	폐문부재		
539	삼산	손죽	산201	전	595	김본성진	차신재	1948.*.**.	OH OH	김남윤	1970.**.**.	충청복도 음성군 삼성면 덕정로44번길	폐문부재		
										이신길	1935.*.**.	전라남도 무안군 망운면 정 <mark>착길</mark>	폐문부재		
										김순애	1948.**.**.	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용리로	폐문부재	<b>{</b>	
										김은희	1965.*.**.	부산광역시 남구 석포로56번길	폐문부재	t	
				(5)	. 3		2	1-	12	연소영	1976.*.**.	서울특별시 중랑구 상봉로	폐문부재		
540	삼산	손죽	산230	임야	8430 (1/2)	송기봉	송철주	1948.*.*.	상속	연보영	1971.*.**.	경기도 부천시 도약로	폐문부재	9	
										송병재	1963.*.*.	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로311번길	폐문부재	<i>†</i>	
541	소라	봉두	832-2	도로	165	김채두	안순목	1957.**.**.	OH OH	김은영	1971.*.*.	서울특별시 관악구 서원4길	폐문부재		
										곽정홍	1957.*.**.	인천광역시 부평구 경인로1118번길	폐문부재	<u>.</u>	
555	남면	두모	산300-4	임야	14258	곽종배	곽사홍	1950.*.**.	상속	곽정란	1967.*.**.	전라남도 여수시 여서로 304	폐문부재	"	
				41011111						황은라	1964.**.**	경기도 포천시 일동면 사리재5길	폐문부재		
556	남면	두모	산387-1	임야	1276	곽태운	곽사홈	1950.*.**.	상속	곽정홍	1957.*.**.	인천광역시 부평구 경인로1118번길	폐문부재	*	25
179000	10.900.007	(c) (	SHANDAGGT	2	5 (5) 50(1) 48(1)	Search Miller	6064000070		00.00	김윤근	1980.*.*.	인천광역시 부평구 길주로347번길	폐문부재		
561	남면	안도	1274	대	559	김정리시	김정태	1969.*.**.	상속	김명숙	1961.*.**.	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일동로	폐문부재		
										최지원	1980.*.**.	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제 <mark>로</mark>	폐문부재		
										김민근	1975.**.**.	경기도 시흥시 서촌상가4길	폐문부재		
582	화정	여자	696	대	423	최인초	최형호	1960.**.**.	OH OH	홍현미	1969.*.*.	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금빛로77번길	폐문부재		
										최동훈	1974.*.**.	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로50길	폐문부재		
										최익선	1972.**.**.	경상남도 통영시 용남면 대곡길	폐문부재		
594	남면	두모	257-4	대	416 (126/129	문석엄	문병규	1954.*.**.	상속	문우의	1948.*.**.	전라남도 여수시 남산북10길	폐문부재		
611	남면 남면	두라 두라	224 310	전 답	724 142	5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	2000000		works:	박성숙	1981.*.*.	전라북도 익산시 선화로3길	폐문부재		
612	남면 남면	두라 두라	307 314-4	임야 임야	1094 1746	김광선	김근평	1960.*.**.	상속	김현정	1978.**.**.	전라북도 남원시 주생면 영천길	폐문부재		
621	남면	우학	76	전	752	김용준	김중혁	1979.*.**.	상속	김선숙	1964.*.*.	경기도 시흥시 서해안로	폐문부재		
				10		전창규	소거문도			박명민	1956.**.**.	경기도 오산시 경기대로25번길	폐문부재		
627	삼산	손죽	산327	임야	313686	김옥조 송독복	새마을 영 농회	3636-****	OH OH	강용운	1959.*.**.	부산광역시 서구 보수대로154번길	주소불명		
						정이순 차정기	(대표자 이주현)			이기우	1937.**.**.	전라북도 완주군 봉동읍 원용암길	폐문부재		
ŧ: :				1-						김옥덕	1950,**.**.	전라남도 여수시 장군산길	폐 <mark>문부재</mark>		
						김재홍	소거문도			김종윤	1964.**.**.	전라남도 여수시 무선8길	폐문부재		
628	삼산	손죽	산366-1	임야	689256	송재호 방일종	새마을 영 농회	3636-****	OH OH	김성일	1974.*.*.	경상남도 장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중리상곡로	폐문부재		
						전창규 김기조	(대표자 이주현)			안요섭	1983.**.*.	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동화갈	폐문부재		
										김옥자	1943.*.**.	울산광역시 동구 진성10길	폐문부재		
629	남면	유송	446-2	CH	195	오재만	이정택	1961.*.*.	0H 0H	오도수	1952.*.**.	인천광역시 동구 솔빚로	폐문부재	·	
						l .									

## 이 의 신 청 서

• 색상이 어두운 난( )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.

( 앞쪽)

접수번호		접수일시 발급일			처리기간	가 공	공고기간 만료일
							부터 2개월
시킨이	성명(법인명)			(주민)등록번	호		
신청인	주소		전화번호				
부동산	소재지			지목		면적(n	n²)

위의 부동산은 본인의 소유임에도 불구하고 년 월 일 가 확인서 발급신청을 했다는 공고가 있습니다. 그러나 별첨 소명서류와 같이 위 부동산은 본인의 소유임이 명백한바, 「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이의를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#### 여 수 시 장 귀하

첨부서류 이의신청인의 소유임을 소명할 수 있는 관련 소명서류	수수료 없음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

#### 개인정보의 수집 • 이용 • 제공 동의서

본인은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15조, 제17조, 제24조 및 제24조의2에 따라 「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대장소관청(해당 권한이 위임·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·위탁받은 자를 포함합니다)이 개인정보를 수집·이용·제공하는 데 동의합니다.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210mm×297mm[백상지 80g/m²]

#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 처 리 기 관 신 청 인 특별자치시·특별자치도·시·군·구(지적·종합민원·시민봉사과 등) 신청서 작성 접 수 사 실 조 사 결 과 통 지 결재

# 사실조사서

	대상토	지 :				
	의견서	내용				
_	확인서	발급신청에	대하여	이의신청	핡	사유

- 예시 1) 90년에 부친이 돌아가시기 전 본인에게 부친이 상속하여 준다는 것을 약속하였고, 가족들 도 이 사실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. 그러나 김갑동이 특조법으로 이전해 간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으므로 이의신청 한 사항입니다.
- 예시 2) 저희 부친은 해당 토지 OO읍 OO리 OO번지를 매매한 사실이 없으므로 다른사람이 이전 해간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으므로 이의신청 한 사항입니다.

※ 확인서 발급 신청인은 이의신청인과 협의를 원하는 경우가 많으므로, 본인의 협의의사를 명확히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.

제출자 인적사항

성 명: (서명 또는 인) 생년월일: 주 소: 역 락 처: 〈예 시〉

# 사실조사서

- □ 대상토지 : 여수시 학동 100번지 대 100㎡
- □ 의견서 내용
  - 1. 확인서 발급신청에 대하여 이의신청 한 사유
    - 예시 1) 90년에 부친이 돌아가시기 전 본인에게 부친이 상속하여 준다는 것을 약속하였고, 가족들 도 이 사실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. 그러나 김갑동이 특조법으로 이전해 간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으므로 이의신청 한 사항입니다.
    - 예시 2) 저희 부친은 해당 토지 OO읍 OO리 OO번지를 매매한 사실이 없으므로 다른사람이 이전 해간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으므로 이의신청 한 사항입니다.

제출자 인적사항

성 명 : 홍 길 동 (서울) 또는 인)

생년월일 : 1912. 3. 1.

주 소 : 여수시 시청동1길 23 (학동)

연 락 처 : 010-2222-4444

◈ 여수시공고 제2021-1615호

### 여수시 리개발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「여수시 리개발위원회 조례」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행정절차법」제41조 및 여수시 자치법규의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21년 6월 4일 여 수 시 장

### 1. 개정이유

- 가. 리개발위원(회)의 추천 절차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이장의 자의적 판단에 따른 위원 추천 사례 발생, 고령화에 따른 농어촌 활동 자원부족 등 위원회 운영상 문제점 해결 필요
- 나. 1998년 제정 이후 「여수시 리개발위원회 조례」의 미 개정에 따라 농어촌(읍면) 지역의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고, 자치법규 입안 기준 및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조례의 명확성을 높이고자 함.

#### 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 조항에 맞게 조문을 수정하고, 목적과 위원회 설치 조항을 분 리하여 목적 및 위원회 설치의 명확성을 높이고자 함.
  - (안 제1조 및 제1조의2)
- 나. 위원회 기능 중 근거법령 변경에 따른 관련 근거법령 개정 (안 제2조제5호)
  - "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0조"를 "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7호나목"
- 다. 이장의 자의(독단)적 판단에 의한 개발위원 추천 등 권한 오·남용에 따라 개발위원회 구성에 있어 주민총회를 통한 개발위원 선출로 개선하여 이장의 자의(독단)적 추천 해석 여지를 해소하고자 함 (안 제3조)
- 라. 개발위원 임기가 타 단체 임기와 연계되지 않아 비효율성을 초래하고, 개 발위원 활동 자원이 부족함에 따라 개발위원 임기를 2년으로 확대하고, 연임 규정을 명시함으로써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

(안 제4조)

- 마. 자치법규 입안 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문구 및 용어 정비
  - "다음 사항을"을 "다음 각 호의 사항을"로, "결정"을 "의결"로, "인"을 "명"으로 정비하고, "1인를"을 "1명을"로 정비한다.
- 4. 입법예고기간 : 2021. 6. 4. ~ 6. 24.(20일간)

### 5. 의견제출

이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나 개인은 2021년 6월 2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수시장(총무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의견제출 사항

-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- 의견 제출자의 주소,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), 연락 처
- 기타 의견
- 나. 의견제출 방법 : 직접방문, 우편, 팩스(번호 061-659-5807)
- 다. 기타 참고사항
  - 우편주소 : (59675) 여수시 시청로 1(학동, 여수시청 총무과)
  - 업무담당자 : 총무과 문경환(inuya80@korea.kr)
  - 문의전화 : 061-659-3106

#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□ 조례명 : 「여수시 리·통·반 설치 및 운영 조례」일부개정안

○ 성명(단체명) :

○ 주 소 :

○ 전 화 번 호:

조례안 항목별 내용	찬성	여부	6] 7 <del>]</del> (3] 6)	기 타
소대한 영국철 대중	찬성	반대	의 견(사 유)	참고사항

# 여수시 리개발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여수시 리개발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리 행정에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주민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리개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조의2(설치) 여수시장은 행정리별로 리개발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
제2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· 의결한다.

제2조제5호 중 "지방재정법 제70조의 규정"을 "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25조제1항제7호나목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6호 중 "기타"를 "그 밖의"로 한다.

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1인"을 "1명"으로, "2인"을 "2명"으로, "4인"을 "4명"으로 한다.

① 위원회는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은 마을 주민총회에서 선출 된 사람을 읍·면장이 위촉한다.

제4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
- ②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보궐 위원을 위촉할수 있으며, 보궐 위원은 마을 주민총회에서 선출된 사람을 읍·면장이 위촉하며, 그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제6조제3항 중 "결정한다"를 각각 "의결한다"로 한다.

제7조제1항 중 "결정"을 "의결"로 한다.

제10조제1항 중 "1인를"을 "1명을"로 한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례) 제3조제1항 및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제3 조제1항에 따라 새로 위원을 위촉되는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# 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혅 햀

제1조(목적) 리 행정에 주민의 의사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리 행정에 주 를 반영하고, 주민을 참여시켜 향 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행정리 별로 개발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
<신 설>

- 심의 결정한다.
  - 1. ~ 4. (생 략)
  - 5. 지방재정법 제70조의 규정에 따 업계획의 작성ㆍ집행 및 수입금 의 관리와 정산에 관한 사항
  - 6. 기타 읍 · 면장 및 이장이 부의 | 6. 그 밖의 ------하 사항
- 천으로 읍 면장이 위촉한 15인 이 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개 정 안

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주민의 참여 를 촉진하기 위하여 리개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1조의2(설치) 여수시장은 행정리별 로 리개발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
제2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제2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• 의결한다.

- 1. ~ 4. (현행과 같음)
- 5.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 른 사업의 계약과 시공계획, 취 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제 25조제1항제7호나목-----

제3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이장의 추|제3조(구성) ① 위원회는 15명 이내 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은 마 을 주민총회에서 선출된 사람을 읍 •면장이 위촉한다.

현 행	개 정 안
② 위원회는 위원장 <u>1인</u> 과 사업위원, 감사위원 각 <u>2인</u> 을 두어야 하며,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<u>4인</u> 이내의 기능별 담당위원을 둘 수있다.	② <u>1명</u> <u>2명</u> <u>4명</u>
③・④ (생 략)	③・④ (현행과 같음)
제4조(위원 등의 임기) <u>① 위원의 임</u> <u>기는1년으로 한다.</u>	제4조(위원 등의 임기) ① 위원의 임 기는 2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 <u>다.</u>
②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이장의 추 천에 의하여 읍·면장이 위원을 보 궐 위촉한다.	②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보궐 위원 을 위촉할 수 있으며, 보궐 위원은 마을 주민총회에서 선출된 사람을 읍·면장이 위촉하며, 그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 다.
제6조(회의 및 의사) ①・② (생 략)	제6조(회의 및 의사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③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<u>결정한다</u> . 다만, 제2조제5호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<u>결정한다</u> .	③ <u>의결한다</u> <u>의결한다</u>

현 행	개 정 안
제7조(사업위원) ① 사업위원은 제2	제7조(사업위원) ①
조제5호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	
<u>결정</u> 한 사항을 위원장과 함께 집행	의결
한다.	<u>.</u>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제10조(서기) ① 위원회에 서기 <u>1인</u>	제10조(서기) ① <u>1명을</u>
<u>를</u> 둔다.	
② (생 략) 	② (현행과 같음)
부칙	부칙
()(테기크레) 시 크레 기체되 도	ر الله عال م
②(폐지조례) 이 조례 시행과 동 시에 종전의 여천군리개발위원회	< 작 세 >
조례는 이를 폐지한다.	
③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	< 삭 제 >
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	
원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	
<u>다.</u>	

여수시공고 제2021-1616호

「여수시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및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「행정절차법」제41조(행정상 입법예고) 및 「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제5조(입법예고 기간 및 방법)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### 2021년 6월 4일

# 여 수 시 장

# 「여수시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및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」제정안 입법예고

### 1. 제정 이유

○ 「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」제27조 및 제29조제4항 에 따라 주민이 참여하고 스스로 결정하는 풀뿌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를 위하여 근거를 마련하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## 2. 주요 내용

- O 조례 제정 목적 및 용어의 정의(안 제1조 ~ 제2조)
- O 각 읍·면·동에 주민자치회 설치(안 제4조)
- O 주민자치회의 기능(안 제5조)
  - 주민총회, 마을계획 수립, 기타 각종 교육 활동, 행사 등 순수 근린자치 영역의 주민자치업무
  - 읍·면·동 행정 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한 협의
  - 시 및 읍·면·동 행정 기능 중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업무 수탁

### O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(안 제6조부터 제15조까지)

- 주민대표, 직능대표, 지역대표를 공개모집 또는 추천받아 위원선정위원회 에서 선정하여 시장이 위촉함(30명 이상 50명 이하)
- 주민자치회장 1명, 부회장 1명(호선, 임기 2년, 자치회장은 연임 불가)
- 간사 1명(회장 선임), 감사 1명(호선 또는 전문가 임명)
- 주민총회 연 1회 이상 개최(주민자치회 의결에 따라 횟수 조정 가능)

### O 주민자치회 위원(안 제16조에서 20조까지)

-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가지며,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
- 위원의 임기는 2년(연임 가능), 연임의 경우에도 제8조(위원의 선정) 절차 따름
- 명예직, 필요한 경우 실비 및 수당 지급 가능

### O 지방자치단체의 지원(안 제21조)

- 주민자치회가 주민을 위한 공공사업이나 제5조(기능) 사무를 추진할 경우, 시장은 행정적 지원 및 전년도 주민세(개인분)의 징수액에 상당하는 예산 등을 재원으로 재정적 지원
- 자치회 위원 및 주민의 역량강화를 위해 교육 등 필요한 시책 수립 및 시행

# O 경과조치(안 부칙 제3조)

-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의 정관·재산 등을 승계
- 3. 입법 예고기간 : 2021. 6. 4. ~ 6. 24.(20일간)
- 4. 「여수시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및 설치・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」 : 붙임

# 5. 의견제출

「여수시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및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」에 대해서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나 개인은 2021년 6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여수시장(총무과장)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이메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

### 가. 의견제출 사항

- O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- O 의견제출자의 주소,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), 전화번호

나. 보내실 곳 : 여수시 총무과

## 다. 의견제출 방법

O 주 소 : 우)59675 여수시 시청로 1(학동) 여수시청 총무과

O E-Mail: rokhwan@korea.kr

O 전 화: 061-659-3105

O F A X: 061-659-5807

#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□ 조례명 :	「여수시 주민자치	시회 시범 실시 및	및 설치 • 운영에	관한 조례」	제정안
○ 성명(단	체명):				
○ 주	소 :				

○ 전 화 번 호 :

조례안 항목별 내용	찬성	여부	의견(사유)	기타
그대단 항기된 데이	찬성	반대	7/2(/11)	참고사항

# 여수시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및 설치.운영에 관한 조례안

### 제1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」제27조에 따라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·면·동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읍·면·동 주민자치회의 시범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- 1. "주민자치회" 란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주민의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해 읍·면·동에 설치되고 주민으로 구성되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등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.
- 2. "주민자치회 위원"이란 해당 읍·면·동의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자치회의 구성 원을 말한다.
- 3. "주민총회"란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람이 참여하여 주민자치 활동과 계획 등 자치활동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주민공론장을 말한다.
- 4. "마을계획"이란 주민총회 등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주민자치회가 수립하는 주민자치 및 마을발전, 민관협력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말한다.

제3조(운영원칙)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.

- 1.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
- 2.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진흥
- 3. 읍 · 면 · 동별 자율적인 운영
- 4.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

제4조(설치 등) ① 시장은 관할지역의 읍·면·동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다.

- ② 주민자치회의 명칭은 「○○읍·면·동 주민자치회」라 한다.
- ③ 시장은 관할지역 내 다음 각 호의 지역에 대하여 주민자치회가 요청하는 경우 분회(또는 지회)를 설치 할 수 있다.
- 1. 도서 및 벽지 지역
- 2. 인구 · 면적 등 지역여건상 분회(또는 지회)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지역

- 3. 그 밖의 지리적으로 교통이나 통신이 불편한 지역
- 제5조(기능) 주민자치회는 「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」(이하 "특별법"이라 한다)제2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  - 1. 주민자치 업무 : 주민총회 개최, 마을계획 수립, 마을 축제, 마을신문·소식지 발간, 공동체 형성, 기타 각종 교육 활동, 행사 등 순수 근린자치 영역에서 수행하 는 주민자치업무
  - 2. 협의업무 : 읍·면·동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한 협의
  - 3. 수탁업무 : 시 및 읍·면·동 행정기능 중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등 주민의 권리· 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업무의 수탁 처리

### 제2장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

제6조(주민자치회 정수)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30명 이상 50명 이하로 구성한다.

- 제7조(위원의 자격)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제8조에 따른 추천 또는 공개 모집한 날현재 만 18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. 다만, 「공직선거법」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과 지방의회 의원은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.
  - 1. 해당 읍·면·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
  - 2.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해당 읍· 면·동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
  - 3. 해당 읍·면·동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
  - 4. 해당 읍·면·동에 소재한 각급 학교, 기관, 단체의 임·직원
  - ②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둘 이상의 주민자치회의 위원으로 선정된 사람 및 제20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해촉된 사람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주민자치회의 위원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.
- 제8조(위원의 선정) ① 주민자치회 위원은 다음 각 호과 같이 구성하며, 공개추첨의 방식으로 선정한다. 다만, 특정 성별이 각 호별 총원의 60퍼센트 이하가 되도록 해 야 하며 사회적 약자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.
  - 1. 공개모집에 신청하고 주민자치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중에서 총원의 60퍼센트이내

- 2. 해당 읍·면·동 소재 각급 학교·기관·단체 및 그 밖의 읍·면·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공동조직 등에서 추천받아 주민자치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중에서 총원의 40퍼센트 이내
- ② 제1항 각 호의 주민자치교육과정의 이수는 시장이 인정하는 주민자치활동에 관한 기본교육과정을 최소 6시간 이상 사전 이수한 것을 의미한다.
- ③ 주민자치회는 제1항에서 선정된 주민자치회 위원 외에 제1항 각 호별 예비후보자 순위를 5명 이내에서 추첨으로 정한다.
- ④ 주민자치회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주민자치회 위원과 예비후보자를 선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그 명부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
- ⑤ 시장은 명부 접수 후 20일 이내에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결과에 따라 주민자치회 위원을 위촉해야 한다.
- ⑥ 주민자치회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시장이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위촉한다. 다만,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는다.
- 1. 예비후보자가 있는 경우에는 명부순위 순으로 위촉
- 2. 예비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8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위촉
- ⑦ 시장은 주민자치회 구성 후 주민자치회 위원의 주요 인적사항을 1개월 이내에 공고 등의 방법으로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개해야 하며, 위원을 새로이 위촉한 경우에도 주요 인적사항을 같은 방법에 따라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개해야 한다.
- ⑧ 주민자치회 위원의 공정한 선정을 위하여 주민자치회 내에 위원 추첨 운영위원 회를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
- ⑨ 주민자치회 위원 구성 및 선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세 칙으로 정한다. 다만, 주민자치회를 최초로 구성하는 경우 주민 의견 등을 수렴하여 해당 읍·면·동장이 정한다.
- ① 시장과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자치회 위원 공개모집 사실을 설명 회의 방식으로 홍보할 수 있다.
- 제9조(주민자치회의 장) ① 주민자치회에 주민자치회의 장(이하 "자치회장"이라 한다) 1명과 부회장 1명을 두고, 자치회장과 부회장은 주민자치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  - ②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를 대표하며 주민자치회 업무를 총괄한다.
  - ③ 자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.
  - ④ 자치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, 연임할 수 없다.

- 제10조(간사 또는 사무국) 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 위원 또는 주민을 간사로 선임하거나, 사무국을 설치하여 주민자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.
  - ② 자치회장은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두어 간사를 보조하게 하거나 사무국에 배치할 수 있다.
  - ③ 제1항에 의한 사무국을 설치하는 경우, 근무자 배치, 수행업무 등 사무국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운영세칙으로 정한다.
  - ④ 자치회장은 제1항에 따른 간사 및 사무국 근무자에게 업무량과 근무시간을 감안하여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, 제2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.
  - ⑤ 시장은 주민자치회 시범 설치·운영에 따라 그 사업 기간 동안 소요되는 제4항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주민자치회에 지원할 수 있다,
- 제11조(감사) ① 주민자치회에 감사 1명을 두며 주민자치회 위원 중 호선한다. 다만,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시장은 주민자치회의 요청에 따라 외부 전 문가를 감사로 임명할 수 있다.
  - ② 감사는 주민자치회의 회계와 주민자치회에서 결정한 사항의 집행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, 그 결과를 주민자치회와 주민총회에 보고·제출해야 하며, 연 1회이상 주민에게 공개해야 한다.
- 제12조(분과위원회) ① 주민자치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.
  - ② 분과위원회는 주민자치회 위원과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으로 구성할 수 있다.
  - ③ 분과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구성된 분과위원회 위원으로서 주민자치회 위원인사람 중에서 호선한다.
  - ④ 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의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, 운영 결과를 주민자치회에 보고해야 한다.
  - ⑤ 그 밖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운영세칙으로 정한다.
- 제13조 (주민총회) ① 주민총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, 주민자치회에서 의결된 안 건을 상정한다. 다만,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주민자치회의 의결에 따라 개최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.
  - ② 주민총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며, 제1항에 따라 상정된 안건은 참석 주민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.

- 1. 주민자치회 활동 평가
- 2. 읍 · 면 · 동 행정사무에 대한 의견제시
- 3. 읍 면 동의 다음년도 마을계획안
- 4. 읍·면·동에 배정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편성안
- 5. 기타 지역 현안, 주민자치, 민관협력 등에 관한 사항의 보고와 결정 등
- ③ 주민자치회는 주민참여와 숙의를 촉진하기 위하여 주민총회일 1개월 전부터 상정 안건 홍보, 주민설명회, 의견수렴 등을 진행하여야 한다.
- ④ 주민자치회는 많은 주민들의 참여와 주민합의를 형성하기 위하여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투표를 진행할 수 있다.
- ⑤ 주민자치회는 해당 읍·면·동의 관계공무원에게 주민총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, 시장 및 해당 읍·면·동장은 주민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.
- ⑥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에서 지역 주민이 직접 발언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.
- ⑦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 개최 후 14일 이내에 개최결과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 읍·면·동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30일 이상 공개한다.
- 제14조 (마을계획의 구성 등) ① 주민자치회는 주민의 의견과 요구를 수렴하여 다음 각 호의 세부계획으로 구성된 마을계획안을 수립한다.
  - 1. 주민자치회 운영계획
  - 2. 마을발전 및 활성화 계획
  - 3. 읍·면·동 행정사무 수탁 및 추진계획
  - 4. 주민자치센터 운영계획
  - 5. 분과별 사업계획
  - 6. 읔 면 동에 배정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편성안
  - 7. 그 밖의 주민자치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계획
  - ② 제1항에 따른 마을계획안은 주민총회에 상정하여 결정하고, 주민자치회는 주민 총회에서 결정된 마을계획안을 14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한다.
  - ③ 시장은 주민의 공론인 마을계획안이 원활히 실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적 · 재정적 협력과 지원을 해야 하고,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마을계획안에 대한 이행계획 및 검토결과 등을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해당 주민자치회에 통보해야 한다.
  - ④ 주민자치회는 제3항에 따라 시장으로 부터 통보받은 결과를 참고하여 마을계획을 확정·의결하고, 확정된 마을계획을 읍·면·동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.

- 제15조(운영) ① 주민자치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운영하며, 정기회의 개최횟수는 주민자치회의 운영세칙으로 정하고, 임시회의는 자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와 읍·면·동장이 자치회장과 협의하였거나 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.
  - ② 제1항에 따라 회의개최 통지는 자치회장 명의로 하며,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  - ③ 주민자치회는 읍·면·동의 관계 공무원에게 회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, 읍·면·동장은 주민자치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.
  - ④ 주민자치회는 수행업무 중에서 주요사항에 대하여 문서회람, 공고 등을 통해 주민의 일부 또는 전체의 의견을 듣거나 의견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

### 제3장 주민자치회의 위원

- 제16조(위원의 책무)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주민자치회 운영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,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한 각종 교육, 연수 등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.
  - ② 주민자치회 위원의 주민자치회 활동은 공익 실현의 목적에 적합해야 하며, 사익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.
- 제17조(정치적 중립)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특별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정치적 중립의의무를 가지며, 「공직선거법」 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.
- 제18조(위원의 임기)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,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제8조 제6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.
  - ② 위원의 연임은 제8조의 위원의 선정 및 위촉 절차를 따르고, 이 경우에도 제8조제2항에 따른 사전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.
- 제19조(위원의 대우)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. 다만,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- 제20조(위원의 해촉) ① 시장은 주민자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 해촉이 된 것으로 보며,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경우 주민자치회

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

- 1.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
- 2. 둘 이상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되거나, 제7조제1항 단서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- 3. 선거운동을 하거나, 특별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경우
- 4. 특별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권한남용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
- 5. 제16조제2항에 따른 사익추구금지 책무를 위반한 경우
- 6. 직무태만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
- ②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다른 위원에게 제1항 제4호 내지 제6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(連書)로 위원의 해촉을 시장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제1항 단서에 따라 의결을 거쳐야 한다.

### 제4장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관계

- 제21조(지방자치단체의 지원) ① 시장은 주민자치회가 읍·면·동 주민을 위한 공공사업을 추진하거나 제5조의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 행정적 지원 및 전년도 주민세(개인분)의 징수액에 상당하는 예산 등을 재원으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  - ② 시장은 주민자치회가 대표적 주민참여기구로서 읍·면·동 단위 주민참여예산 기구, 도시재생주민협의체 등 주민참여기구를 대체하거나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 해야 한다.
  - ③ 시장은 온라인 참여 여건을 조성하는 등 주민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.
  - ④ 시장은 주민자치회 위원 및 주민의 자질 함양과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해야 한다.
  - ⑤ 제4항에 따른 시책 수립을 위하여 해당 읍·면·동장 및 자치회장은 시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.
  - ⑥ 시장은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해당 지역 읍·면·동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주민자치회 운영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.
  - ⑦ 시장은 주민자치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전용 사무실을 제공할 수 있다.
  - ⑧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으로 하여금 주민 자치회의 설치·운영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.

- 제22조(관계기관 등과의 협조) 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·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.
  - ② 주민자치회는 제5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다른 주민자치회와 공동 추진이 필요한 경우, 해당 주민자치회와 협의하여 별도의 협의체 등을 구성 · 운영할수 있다.

### 제5장 보칙

- 제23조(감독) ① 시장은 주민자치회에 위탁한 업무와 재정지원 분야 등에 관하여 관련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,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.
  - ② 제1항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.
- 제24조(보험) 시장은 제5조의 사무를 수행하는 주민자치회 종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단체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.
- 제25조(운영세칙) 그 밖의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자치회장이 정한다.

### 부 칙

- 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제2조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는 기존 「여수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」에 따른 읍·면·동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·재산등을 승계하는 것으로 간주한다.
- 제3조(유효기간) 이 조례는 시범실시 기간까지 효력이 있다.

「여수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」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「행정절차법」제41조(행정상 입법예고) 및 「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제5조(입법예고 기간 및 방법)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1년 6월 4일

# 여 수 시 장

# 「여수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」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

### 1. 개정 이유

○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해 프로그램 강사료 일부를 인상하고, 코로 나19 등 재난 상황으로 프로그램 일부 휴강 시 강사 수당 일할 지급을 위 해 강사 협약서 서식 일부를 수정하고자 함.

# 2. 주요 내용

- O 자원봉사자 및 강사 수당 지급 기준 개정(별표)
  - 수강인원별 지급 범위 월 100천원 인상
- O 강사협약서 서식 개정(별지 7호 서식)
  - 재난상황 등의 사유로 부득이 수업을 휴강할 경우 보강 및 대강을 실시 하여야 하며, 보강 및 대강이 어려울 경우 갑은 월 강의 계획 대비 강의 횟수에 비례하는 수당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
- **3. 입법 예고기간** : 2021. 6. 4. ~ 6. 24.(20일간)
- 4. 「여수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」 일부개정규칙안 : 붙임

### 5. 의견제출

「여수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」에 대해서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나 개인은 2021년 6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여수시장(총무과장)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이메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

### 가. 의견제출 사항

- O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- O 의견제출자의 주소,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), 전화번호
- 나. 보내실 곳 : 여수시 총무과

## 다. 의견제출 방법

- 주 소 : 우)59675 여수시 시청로 1(학동) 여수시청 총무과
- O E-Mail: rokhwan@korea.kr
- O 전 화: 061-659-3105
- O F A X: 061-659-5807

#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□ 규칙명 :	「여수시 주	민자치센터 설	보치 및 운영	조례 시	시행규칙」	일부개정규칙인	ŀ
○ 성명(단	·체명) :						
○ 주	소:						

○ 전 화 번 호 :

규칙안 항목별 내용	찬성	여부	의견(사유)	기타
미역한 왕국물 대통	찬성	반대	コ化(作用)	참고사항

여수시 규칙 제 호

# 여수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여수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별지 제7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【별표】

# 자원봉사자 및 강사 수당 지급 기준(제11조 관련)

구	분	기 준	지 급 범 위	비고	
자원봉사 실비 5	<b>사자</b> 보상	강의봉사지	■ 시간당 20,000원 이내		
		수강인원 20명	■ 월 400,000원 이내		
강사수	당	수강인원 21명~305	■ 월 410,000원~500,000원	1명당 1만원씩 가산 인센티브 부여	
(월)		수강인원 31명~395	■ 월 505,000원~545,000원 인센티브 부여		
		수강인원 40명이상	■ 월 550,000원~600,000원	1명당 5천원씩 가산 인센티브 부여 <mark>60만원 한도</mark>	

# 강 사 협 약 서

여수시 ○○읍 · 면 · 동장(이하 "갑"이라 한다)과 ○○읍 · 면 · 동주민자치센터 △△프로 그램 운영강사 ☆☆☆(이하 "을"이라 한다)의 공정한 거래에 관한 사항을 정함과 동시에 "갑"과 "을"의 공동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.

### 제1조(갑의 의무)

"갑"은 양질의 강의 환경 조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의무를 가진다.

### 제2조(을의 의무)

"을"은 양질의 강의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의무를 가진다.

### 제3조(강좌 운영)

"갑"과 "을"은 강좌기간, 강좌내용, 강의시간, 수강정원, 교재비 등에 대해 협의하며 이 내용을 "을"은 강의계획서로 강좌개시 전 "갑"에게 제출한다. 위의 내용이 변경되어 진행될 시 "갑"과 "을"은 사전 협의한다.

#### 제4조(제3자 강습금지)

"을"은 자신이 담당한 강좌를 임의로 제3자에게 위임할 수 없다.

### 제5조(휴강 조치)

"을"은 "갑"과의 사전협의 없이 임의로 수업을 휴강할 수 없으며, "을"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수업을 휴강할 때에는 반드시 "갑"과 수강생들의 사전 동의가 있어야 한다.

# 제6조(보강 또는 대강)

수업을 휴강하였을시는 반드시 보강을 하여야 하며 보강시기는 "갑"과 "을"의 협의하에 결정한다. 단 별도의 보강 조치없이 본 수업에 대강 조치를 할 경우 사전에 "갑"의 동의를 구한다.

### 제7조(특별수업)

"을"이 담당한 강좌에서 야외수업 등 통상의 강의 이외의 사항을 계획할 때에는 반드시 사전에 "갑"과 협의하여야 한다.

# 제8조(물품 판매)

"을"이 담당한 강의에서 사용할 교재류 또는 기타 물품을 유료로 회원에게 판매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"갑"과 협의하여야 한다.

# 제9조(강사 수당)

① 강사수당은 시간당 원으로 하며 법령이 규정하는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하고 월별 일괄하여 다음달 초에 "을"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한다.

② 재난상황 등의 사유로 부득이 수업을 휴강할 경우 을은 제6조에 따라 보강 및 대 강을 실시하여야 하며, 보강 및 대강이 어려울 경우 갑은 월 강의 계획 대비 강의 횟수에 비례하는 수당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.

### 제10조(협약기간)

협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서명 날인함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한다.

### 제11조(협약해지)

"갑"은 "을"이 수강생간의 화합분위기 조성 및 프로그램 발전에 저해한다고 판단될 때 또는 본 협약사항을 위배하여 강의가 지속될 수 없는 경우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### 제12조(자동 갱신)

본 협약은 "갑"과 "을"의 문제 제기가 없을시 자동 갱신됨을 원칙으로 한다.

### 제13조(조정)

본 협약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"갑"과 "을" 상호 신뢰속에서 조정한다. 본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협약서 2통을 작성하고 "갑"과 "을"이 각각 서명 날인하 여 각 1통씩 보관한다.

년 월 일

- (갑) 여수시 ○○읍·면·동장 (인)
- (을) 강 사 성 명 (인) 주민등록번호 주 소

# [여수시 공고 제2021-1618호]

# 도로 지정(변경) 공고

여수시 돌산읍 평사리 산279번지 외 1필지 상 건축허가[2016-허가민원과-신축 허가-156호]와 관련하여「건축법」 제2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법 제45조제1항 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로로 지정(변경)·공고합니다.

### 1. 도로 지정 공고 내역

구분	도로	위 치	도로길이 (m)	도로너비 (m)	도로면적 (m²)	관련지번 및 이해 관계인 동의 여부	비 고
당초	계		31.49	6	180	도로대장 참조	
변경	격	]	186.16	6	1,312	(허가민원과 비치)	
당초	돌산읍 평사리	산 <b>27</b> 9-9	31.49	6	180		
		산 <b>27</b> 9-9	5	6	13		
변경	돌산읍 평사리	산 <b>27</b> 9-9	31.49	6	180		
		산279	186.16	6	1,299		

※ 도로지정공고(당초) : 제2018-2674호 (2018. 12. 6.)

2. 관련도서 : 생략(여수시청 허가민원과에 비치)

# 3. 기타사항

도로 지정과 관련된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여수시청 허가민원과 (061-659-4101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2021. 6. 4.

여 수 시 장

여수시 공고 제2021-1619호

「여수시 청년발전 기본 조례」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「행정절차법」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## 2021년 6월 4일

# 여 수 시 장

# 「여수시 청년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」입법예고

### 1. 개정 이유

○「청년기본법」의 제정('20. 2. 4. 제정, 8. 5. 시행)에 따라「여수시 청년발전 기본 조례」를 상위법과 부합토록 일부 개정하고자 함

# 2. 주요 내용

- "청년시설"용어 정의 추가(안 제3조제5호)
- ○「청년기본법」제7조에 따른 청년의 날 관련 사항 신설(안 제6조)
- 종전 제6조(기본계획의 수립) 삭제
- ○「청년기본법」제8조, 제9조에 따른 청년정책에 관한 실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(안 제7조)
- 청년정책위원회의 당연직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(안 제9조)
- ○「청년기본법」제26조에 따른 포상 관련 사항 신설(안 제24조)

# 3. 개정조례안 : 붙임

**4. 입법예고 기간**: 2021. 6. 4. ~ 6. 24. (20일 간)

### 5. 의견 제출

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수시장(인구일자리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(반대 시 이유 명시)

나. 성명(기관,단체의 경우 기관,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그 밖의 참고 사항 등

### ※ 제출의견 보내실 곳

- 일반우편 : 전남 여수시 진남체육관길 74, 인구일자리과

- 전자우편 : savinoo@korea.kr - 팩 스 : (061)659-5819

## 6. 그 밖의 사항

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인구일자리과(☎061-659-3678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□ 조례명 :「c	겨수시 청년발전	기본 조리	ᅨ」일부개정안
-----------	----------	-------	---------

○ 성명(단체명):

○ 주 소:

○ 전 화 번 호 :

조례안 항목별 내용	찬성	여부	이거(기호)	기타
조네인 성곡될 내용	찬성	반대	의견(사유)	참고사항

# 여수시 청년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여수시 청년발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5. "청년시설"이란 청년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냄으로써 청년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.

기존 제6조(기본계획 수립)을 삭제하고 제6조(청년의 날)을 신설한다.

제6조(청년의 날) 시장은「청년기본법」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청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청년발전 및 청년문제에 대한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 나 교육、홍보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제7조를 개정한다.

- 제7조(청년정책에 관한 실행계획) ① 시장은「청년기본법」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수립된 청년정책계획에 따른 연도별 실행계획(이하 "실행계획" 이라 한다)을 매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해야 한다.
  - ② 실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.
    - 1.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
    - 2. 청년정책에 다음 각 목의 사항
      - 가.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ㆍ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 확대에 관한 사항
      - 나. 청년의 고용촉진 및 창업지원에 관한 사항
      - 다. 청년의 능력개발에 관한 사항
      - 라. 청년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
    - 마. 청년 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
    - 3.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및 지원체계
    - 4. 청년정책위원회 등 민 · 관 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
    - 5. 그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
  - ③ 시장은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 시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.
  - ④ 시장은 실행계획과 전년도 추진실적을 제8조의 여수시 청년정책위원회에 보고해야한다.

제8조제1호 및 제8조제2호를 개정한다.

제8조(위원회의 설치) 시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여수시 청년정책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
- 1. 실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
- 2. 실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

제9조제2항을 개정한다.

제9조(위원회의 구성 등) ②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, 당연직 위원은 기획경제국장, 행정지원국장, 환경복지국장, 해양수산녹지국장, 관광문화교육국장, 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.

제12조제3항을 개정한다.

제12조(청년정책협의체 설치·운영) ③ 협의체는 청년정책과 관련된 의제를 제안할 수 있으며 청년정책 추진과정에서 정책 거버넌스 구성원으로서 참여할 수 있다.

제24조를 신설한다.

제24조(포상) 시장은 다른 사람에게 모범이 되는 청년 또는 청년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「여수시 포상조례」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.

제24조를 제25조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 · 구조문 대비표

개 정 안
제1조 ~ 제2조(현행과 같음)
제3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1.·2.·3.· 4. (현행과 같음) 5. "청년시설"이란 청년활동을 지원 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 어냄으로써 청년정책의 목적을 달 성할 수 있도록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.
<u>&lt;삭 제&gt;</u>

력체계 구성 및 운영 5. 그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

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 시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.

<신 설>

장은 제6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 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· 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시행 계획과 전년도 추진실적을 제8조의 여수시 청년정책위원회에 보고하 여야 한다.

제6조(청년의 날) 시장은 청년기본법」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청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 여 청년발전 및 청년문제에 대한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교육 홍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제7조(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) ① 시 제7조(청년정책에 관한 실행계획) ① 시장은「청년기본법」제8조 및 제9 조에 따라 수립된 청년정책계획에 따른 연도별 실행계획(이하 "실행 계획"이라 한다)을 매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해야 한다.

- ② 실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 용이 포함되어야 한다.
  - 1.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. 청년정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시항 가. 경제 · 사회 · 교육 · 문화 ·

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 확대에 관한 사항

나. 청년의 고용촉진 및 창업

지원에 관한 사항 다. 청년의 능력개발에 관한 사항

라. 청년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

마. 청년 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시항

3.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및 지원체계

- 제8조(위원회의 설치) 시장은 청년정 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 의하기 위하여 여수시 청년정책위 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  - 1.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
  - 2. 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
  - 3.·4.·5. (생략)

제9조(위원회의 구성 등) ① (생 략) 제9조(위원회의 구성 등) ① (현행과 같음)

- ②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 하며, 당연직 위원은 기획경제국장, 행정지원국장, 환경복지국장, 해양 수산녹지국장, <u>관관문화교육국장으</u> 로 한다. (개정 2018. 9. 18., 201 8. 12. 10.)
- ③·④·⑤·⑥·⑦ (생 략)

제10조 ~ 제11조 (생 략)

①·② (생 략)

- 4. 청년정책위원회 등 민ㆍ관 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
- 5. 그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
- ③ 시장은 실행계획을 수립 시행 할 때 시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.
- ④ 시장은 실행계획과 전년도 추진 실적을 제8조의 여수시 청년정책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.

제8조(위원회의	설치)	 

- 1. 실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
- 2. 실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.·4.·5. (현행과 같음)

- --- 관광문화교육국장, 건설교통국 장으로 한다. (개정 2018. 9. 18., 201 8. 12. 10.)
- ③·④·⑤·⑥·⑦ (현행과 같음)

제10조 ~ 제11조 (현행과 같음)

제12조(청년정책협의체 설치·운영) 제12조(청년정책협의체 설치·운영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
③ 협의체는 기본계획 수립과정에 참여하여 청년정책과 관련된 의제를 제안할 수 있으며 청년정책 추진 과정에서 정책 거버넌스 구성원으로서 참여할 수 있다.

[본조 신설 2018. 9. 18.]

제13조 ~ 제23조 (생 략)

<신 설>

제24조 (생략)

③ 협의체는 청년정책과 관련된 의제를 제안할 수 있으며 청년정책 추진과정에서 정책 거버넌스 구성원으로서 참여할 수 있다.

제13조 ~ 제23조 (현행과 같음)

제24조(포상) 시장은 다른 사람에게 모범이 되는 청년 또는 청년발전에 현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「여수시 포상조례」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.

제25조 (현행 제24조와 같음)